기초생활보장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이 콘텐츠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대상, 급여의 신청절차,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따른 각종 특례, 급여별 보장내용, 사회취약계층 보호 제도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1
1.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4
1.1.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4
1.1.1.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4
1.1.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4
2.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7
2.1. 급여 신청절차 7
2.1.1. 수급자 신청하기 7
2.1.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9
2.2. 급여 선정기준 12
2.2.1. 수급자 보장단위 12
2.2.2. 소득 기준 확인하기 13
2.2.3. 재산 기준 확인하기 17
2.2.4.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20
2.3. 급여 신청자격 조사 22
2.3.1.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22
2.4. 급여의 결정 통지 25
2.4.1. 급여의 결정 및 통지 26
3.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27
3.1. 급여의 지급 27
3.1.1. 급여의 지급 및 변경 27
3.2. 급여별 대상 및 지급 29
3.2.1.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29
3.2.2.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32
3.2.3.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34
3.2.4.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36
3.2.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38
3.2.6. 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38
3.3.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40
3.3.1.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40
3.3.2. 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등 43
4.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47
4.1.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47
4.1.1.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47
4.1.2.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48

1.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1.1.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1.1.1.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급여별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 아래의 사회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57~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보호

▪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내용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입니다.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장요건

▹ 실제거주 요건: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부여됩니다.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법

▪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노숙인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확인불가자 등	
				시설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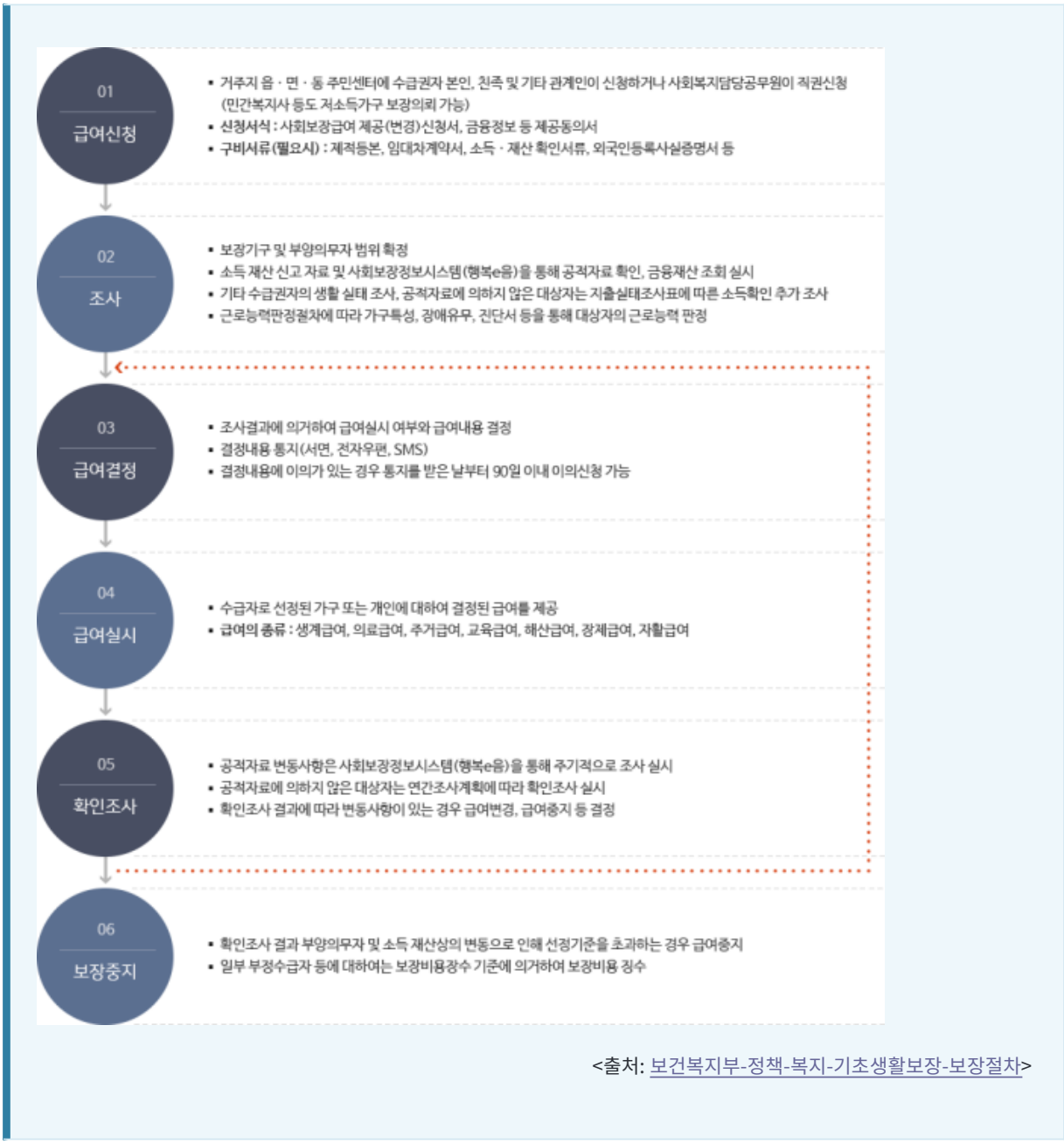
2.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2.1. 급여 신청절차

2.1.1. 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보장절차도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신청장소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1~22쪽 참조).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쪽).

>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
>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2.1.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한눈에 비교하는 각종 특례

▪ 법률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3~54쪽).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 기준)	맞춤형 급여체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체계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의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맞춤형 급여체계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맞춤형 급여체계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맞춤형 급여체계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맞춤형 급여체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하여 겪게 된 피해를 사유로 받은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또는 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 제외	맞춤형 급여체계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 등 일시금은 재산 산정 제외	맞춤형 급여체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관련 주거급여 특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자격 유지	주거급여 수급자
(4)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 수급자(A+B)×18%	보장시설 수급자

※ 세부내용은 해당 특례편 참조

※ 그 밖의 수급자 범위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3~7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아내, 어머니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쪽 참조>

※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 급여신청의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수급을 신청하는 사람 중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7~368쪽 참조>

2.2. 급여 선정기준

2.2.1. 수급자 보장단위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 지급

가구단위 보장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2.2.2. 소득 기준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참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1쪽 참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959,198원씩 증가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재산 기준 확인하기>를 참조하세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1~52쪽).

※ 202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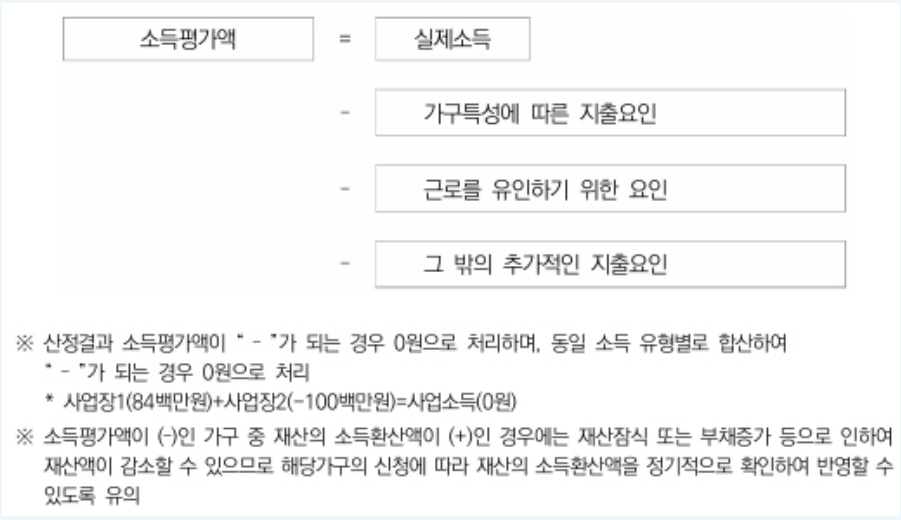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306,943원(7인기준 - 6인기준)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이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9쪽 참조).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사업장1(84백만원)+사업장2(-100백만원)=사업소득(0원)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9쪽>

실제소득

"실제소득"이란

▪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및 소득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2.3.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1, 99, 165쪽 참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재산을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참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재산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5,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4쪽 참조>

▪ 금융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2호)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자동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 각종 자동차

>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1 참조)
>
>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본문 참조).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 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3개월 입금 총액과 통보된 금융재산 잔액의 차액은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확인 후 기타산정되는 재산 산정 여부 확인 후 자연적 소비금액 반영.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57쪽 참조>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참조).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3 참조).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쪽 참조>

부채

▪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0-161쪽 참조).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하고,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1쪽).

▪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3쪽).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참조).

구 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6쪽 참조>

Q.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쪽 참조>

2.2.4.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참조).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및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부양능력 유무 확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

▹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인 경우(「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2조 및 제5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인정기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2항).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3. 급여 신청자격 조사

2.3.1.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조사 내용

▪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함)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6제3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보장기관”이라 함)**의 수급자격 조사방법**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조사내용>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통합조사 담당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4쪽>

조사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 수급권자가 급여신청을 할 때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

자료 제출 요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자 및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요청

▪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함)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이란

▪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의 기준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3항 전단).

▪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하며,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2.4. 급여의 결정 통지

2.4.1.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의 결정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한 경우에는 매년 1월까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통지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통지기간

▪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3.1. 급여의 지급

3.1.1. 급여의 지급 및 변경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 시작일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급여 지급 절차

복지급여 지급 절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좌 이체

처리업무 내용	처리 담당	세부내용
급여변동대상 확인	(시·군·구)	•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급여자료 생성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급 확정일 24:00시를 기준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급여 확정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 수정이나 삭제 불가, 단, 지급제외 처리는 가능
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① 전자결재에 자동 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	
전자결재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시·군·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② 'e-호조'에 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	•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
시·군·구 회계 부서에서 입금 조치	③ 금융결제원,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감) 금고 이체 입금 시 계좌 실명 (유효성 확인)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지급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다.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참고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0쪽>

급여의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직접 지급

▪ 수급자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다음의 사유로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3항).

▪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제2호).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6쪽)

급여의 변경 및 중지

급여의 변경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급여의 지급 중지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의 중지

▪ 보장기관은 급여를 중지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3.2. 급여별 대상 및 지급

3.2.1.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참조).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8쪽 참조).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및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제외)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및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2호 참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6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26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306,943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351,791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9쪽>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급중지 통지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지급중지 기간

▪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지급중지 금액

▪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며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8쪽 참조).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즉,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함

생계급여의 재개

▪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 참조).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2026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84,636	629,894	803,855	974,211	1,133,508	1,283,393	1,427,273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43,880원 추가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0~251쪽)

3.2.2.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쪽 참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306,943원(7인기준 - 6인기준)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2항).

임차급여

임차급여 지급기준

▪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참조).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2026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 2026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2.3.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의료급여의 대상

"의료급여"란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의료급여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쪽 참조).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의 급여 기준

급여내용

▪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참조).

급여절차

▪ 급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 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요양비 지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함)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2조의2제1항).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3.2.4.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교육급여의 지급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26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502,000원	연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99,000원		
고등학생		1명당 860,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 인출 유보

<출처: 교육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6쪽>

3.2.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참조).

해산급여 지급

▪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이 추가(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로 지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4쪽).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란

▪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 참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장제급여 지급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참조).

▹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3.2.6. 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자활급여 대상

"자활급여"란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자활급여 지급내용

▪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지급

자활근로사업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자활근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직업훈련

▪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취업알선

▪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자금대여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창업지원

▪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희망키움통장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 희망키움통장 II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 ·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3.3.1.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신청안내-수수료감면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전기요금 할인

▪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 8, 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한전ON-전기요금제도 참조).

-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참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4쪽).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3~474쪽).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65세 이상
  - √ 영유아 :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통신요금 감면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 : 35%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 50% 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쪽>

▪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5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4쪽).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4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4쪽).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3.3.2. 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등

무료소송지원제도 등

무료소송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Q.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또는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사전예약 필수)하여 법률상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소송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5쪽).
  -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며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4쪽).
-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4쪽).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 등록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Q.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5쪽>

Q.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5쪽>

※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3쪽).

-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자금지원
  -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의뢰
  - √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비스의뢰 가능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은 생활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 학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4.1.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4.1.1.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확인 기간 및 확인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본문).

일반적인 확인방법

▪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
  - √거주지역
  - √세대의 구성원
  -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1쪽 참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참조).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방법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2쪽).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의 등록 및 관리

▪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이 되어 관리 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7항 참조).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6~267쪽).

-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의심, ② 위장이혼, ③ 자동차명의도용, ④ 소득·재산은닉, ⑤ 부양의무자 누락,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⑧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⑨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 처리 내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7쪽 참조).

4.1.2.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보장비용의 징수

보장비용의 징수 대상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함)으로부터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보장비용 징수금액 산정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이하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함)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 부양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으로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보장비용 납부 통지 및 독촉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과오수급 반환명령

과오수급의 대상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본문).

과오수급의 감면

▪ 다만, 이미 수급품을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단서).

▪ 과오수급 반환명령의 처리절차

① 과잉 지급분 발생	• 이미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 과오수급(반환명령) 대상 과지급 급여액과 징수계획 결정, 결재를 득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징수대상자관리 반환대상자 등록 •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 반환 거부 (1차)
④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반환 거부 (2차)
⑤ 체납처분	•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 당해 연도 급여분 :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0쪽>